

정안,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1-23번지 외 14필지 소재 '정안,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'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2월 26일

부 천 시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나. 명 칭 : 정안,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1-23번지 외 14필지
- 나. 면 적 : 2,570.40m²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가. 착 수 예 정 일 : 미정
- 나. 준 공 예 정 일 : 미정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조 합 명 칭 : 정안,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객선미)
- 나. 사 무 실 소 재 지 :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 75, 제10동 제1호

5. 조합설립변경인가 변경 내용

○ 정관변경

- 사업시행구역 면적 변경(2,606.70m² → 2,570.40m²)
- 임원의 임기(2년 → 3년)
- 총회의 의결방법
- 이사회 의결방법

○ 조합원 변경(81명 → 61명)

- 조합원 제외(20명)

6.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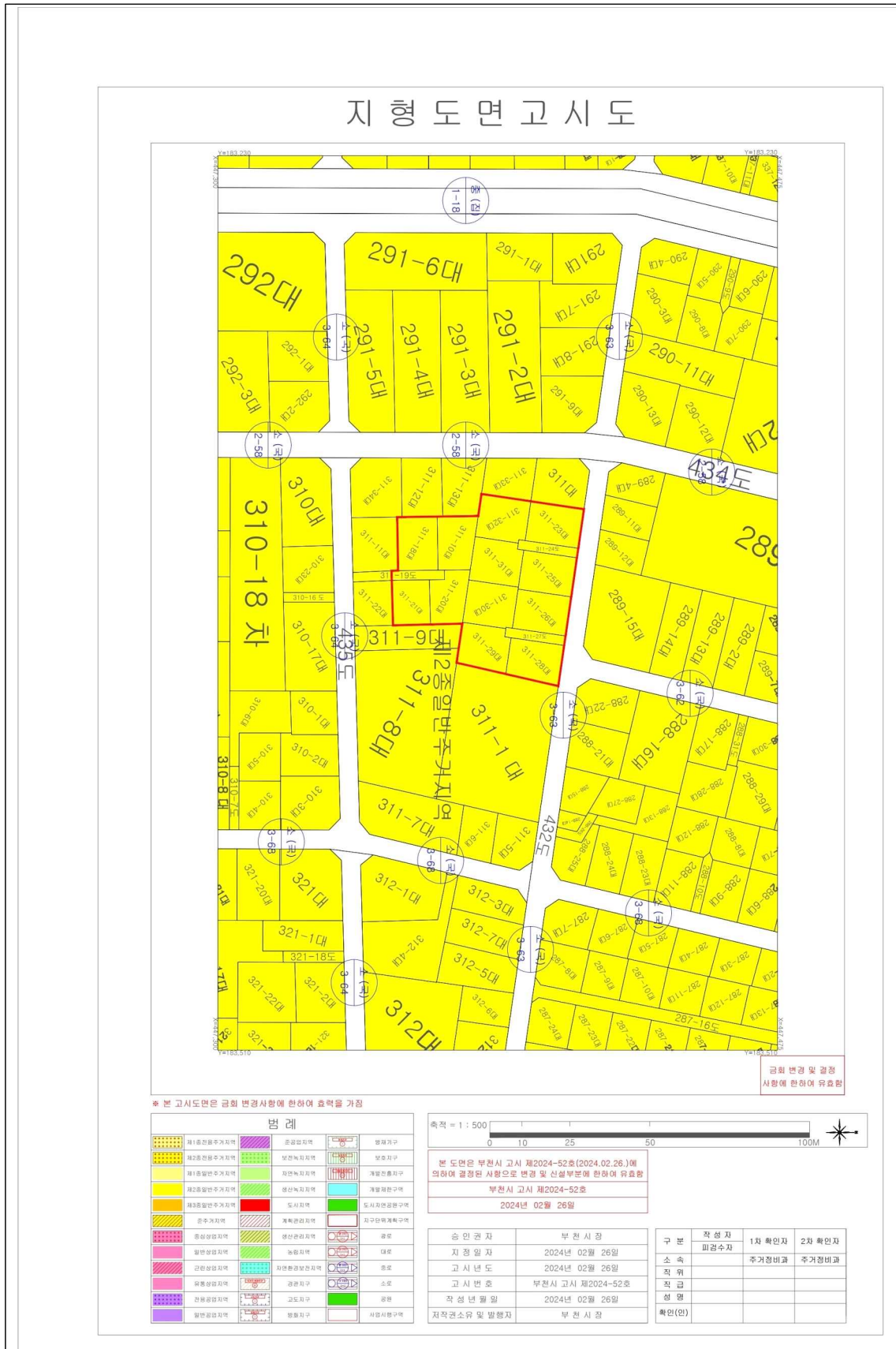
○ 사업시행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표시 번호	사업명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-	정안,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	부천시 고강동 311-23번지 외 14필지	-	감)36.3m ²	2,570.40m ²	-

○ 사업시행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위치	면적(m ²)	결정(변경)사유
신설	-	부천시 고강동 311-23번지 외 14필지	2,570.40	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」제23조 개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 업 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재

□ 붙임 : 지형도면 고시



소관부서	주거정비과	담당자 직 · 성명	주무관 지주현	전화번호	032-625-3763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